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997 제출연월일: 2024. 7. 19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,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 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,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합격자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 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.

제3조의2제2항 중 "제4조의 결격사유"를 "제4조 각 호(제1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자격) 제3조의2에 따른 공	제3조(자격)		
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			
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.			
<단서 신설>	다만,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미성		
	년자인 합격자는 성년이 된 날		
	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		
	<u>다.</u>		
제3조의2(공인노무사 자격시험)	제3조의2(공인노무사 자격시험)		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		
②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	②		
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	<u>제4조</u>		
<u>의 결격사유</u> 에 해당하는 사람은	각 호(제1호는 제외한다)의 어		
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	<u>느 하나</u>		
수 없다.		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	